



환경부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 개정 알림

1. 코로나19 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귀 기관(업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부는 코로나19 발생 직후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시행하여 타 감염병 폐기물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3. 코로나19 장기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완화(1급→2급, '22.4) 및 코로나19 격리의료 폐기물 배출량 감소 등을 고려하여, '23.1.1일부터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상 격리의료폐기물 기준으로 복귀함을 알려드립니다.**

	[현행]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6판)	[변경] 「폐기물관리법」 상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
배출	○ 모두 냉장보관 원칙 ○ 당일 배출	○ 성질·상태가 조적물류인 경우 냉장보관 ○ 보관 가능(7일 이내)
수집·운반	○ 당일 운반 , 임시보관 금지	○ 임시보관 가능(2일 이내)
처리	○ 당일 소각처리	○ 보관·처리(2일 이내)

* 발생량 모니터링을 위해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전자태그 부착은 유지
처리기준 변경으로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비용 지원 종료**

4. 배출자 및 수집운반·처리업체는 처리기준 변경 시행 이후로도 코로나19 격리의료 폐기물을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밀봉·소독**하여 배출하고, **보관시설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각 기관 및 협회에서는 현장에서 의료폐기물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할 업체에 변경된 사항을 즉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환경부 장관



수신자 한강유역환경청장(자원순환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자원순환과장), 금강유역환경청장(자원순환과장), 영산강유역환경청장(자원순환과장), 원주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대구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전북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서울특별시(기후환경정책과장), 인천광역시(자원순환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자원순환과장), 대전광역시(자원순환과장), 광주광역시(자원순환과장), 대구광역시(자원순환과장), 울산광역시(자원순환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자원순환과장), 경기도지사(자원순환과장),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환경안전관리과장), 전라북도지사(기후환경정책과장),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물환경과장), 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생활환경과장), 보건복지부장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국방부장관(국유재산환경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운영지원과장),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질병관리청장(검역정책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주무관 권예진 환경사무관 김민석 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국장 정선화 전결 2022. 12. 22.

협조자

시행 폐자원관리과-4576 (2022. 12. 22.) 접수

우 30103 세종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 <http://me.go.kr>

전화번호 044-201-7361 팩스번호 044-201-7235 / noelyejin@me.go.kr / 대국민 공개